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동용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374 발의연월일: 2023. 3. 2.

발 의 자:서동용・김용민・박광온

안민석 · 김정호 · 문정복

김남국 • 도종환 • 유기홍

민형배 • 박재호 • 이동주

의원(12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,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유형에서 언어폭력(41.8%), 신체폭력(14.6%), 집단따돌림(13.3%)에 이어 사이버폭력이 9.6%의 비중을 보일 정도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.

또한, 사이버폭력의 일환으로 'Wifi 셔틀', '게임 아이템 셔틀', '이모 티콘 셔틀'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는 상황임. 그럼에도 현행법은 단순한 접근금지 조치만 내려져 물리적 피 해 이외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피해학생의 보호가 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임. 이에 현행법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를 명시하고,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의 환불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17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1항제2호 중 "금지"를 "금지(「전기통신기본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"를 "제1항제2호, 제2호의2, 제3호, 제4호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"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"를 "제1항제1호, 제2호, 제2호의2, 제3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 중 "제1항제2호부터"를 "제1항제2호, 제2호의2, 제3호"로 하며, 같은 조 제11항 중 "제1항제2호부터"를 "제1항제2호, 제2호의2, 제3호부터"로 한다.

2의2.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 금액 환불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적용례)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심의위원회가 학교의 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	제17조(가해학생에 대한 조치) ①
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	
와 가해학생의 선도·교육을	
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	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하는 조치(수 개의 조치를 동	
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	
다)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	
청하여야 하며, 각 조치별 적용	
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	
다만,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	
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	
적용하지 아니한다.	<u>.</u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피해학생 및 신고·고발 학	2
생에 대한 접촉, 협박 및 보	
복행위의 <u>금지</u>	금지(「전기통신기본
	법」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
	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경우를
	<u>포함한다)</u>
<u>&lt;신 설&gt;</u>	2의2. 피해학생에 대한 피해 금
	액 환불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
- ② (생략)
-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 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 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,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 서 정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경우 우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제5호와 제6호의 조치는 동시에 부과할 수있다.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
- ⑤ ~ ⑩ (생 략)
- ①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이 해당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경우 심의위원회는 제7항에도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추가로 다른 조치를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항제2호, 제2호의2, 제3
<u>호, 제4호</u>
4
<u>제1항제1호, 제2호,</u>
제2호의2, 제3호
⑤ ~ ⑩ (현행과 같음)
① 제1항제2호, 제2호의2, 제3
호부터